



( : )

[시행 2021. 6. 9] [해양수산부령 제484호, 2021. 6. 9, 일부개정]

해양수산부 (해양생태과) 044-200-5318

1 ( ) 이 규칙은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4 2( ) 법 제2조제12호에서 “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”이란 별표 4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7. 9. 29.]

5 ( ) 법 제2조제13호에서 “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”이란 별표 5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7. 9. 29.>

6 ( 가 )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해양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사업
- 2. 해양보호구역 관련 국제협력사업
- 3. 그 밖의 해양생태계보전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

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은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.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,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6 2( 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해양생태축을 설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.

- 1. 해양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해 보전·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
- 2.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의 관찰이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.

- 1. 해양생태축의 명칭
- 2. 해양생태축의 위치 또는 범위
- 3. 해양생태축의 설정 목적
- 4. 해양생태축의 설정 연월일
- 5. 해양생태축의 지형도 또는 해도

[본조신설 2021. 6. 9.]